

보도	2025.1.7.(화) 조간	배포	2025.1.6.(월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임권순 (02-3145-7580)	
	공매도특별조사단	책임자	실 장	박재영 (02-3145-5630)	
	공매도 전산화 TF	담당자	선 임	김성중 (02-3145-6896)	
	정보화전략국	책임자	국 장	이성욱 (02-3145-5370)	
	감독정보시스템2팀	담당자	팀 장	안성원 (02-3145-5430)	

공매도 전산화의 시작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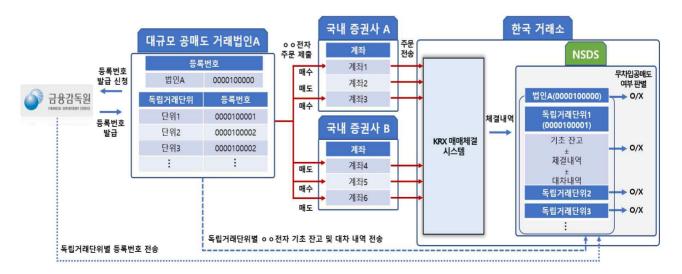
[주요 내용]

- □ (개요)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('24.6.)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*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'25.1.7.부터 실시합니다.
 - *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의무 구축 법인(수 제208조의7제3항)
- □ (기대효과)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여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
- NSDS가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·독립거래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.
- □ (양후 일정) 차질없는 공매도 재개환경 마련을 위해 공매도 등록 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'25.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하고
 - 동시에 **공매도 전산화 TF는 투자자**가 **공매도 재개**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I. 개 요

- □ (추진배경)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*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**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
 - *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예외
 - ** 공매도 잔고 0.01% 또는 10억원 이상
 -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·변경·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
- □ (상세내용)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*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
 - *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
 -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
 -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하여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,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

< 공매도 등록번호를 활용한 NSDS 탐지 프로세스 >



Ⅱ. 기대 효과

- □ (공매도 거래 투명성↑)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 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
- □ (NSDS 탐지 완전성↑)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 하여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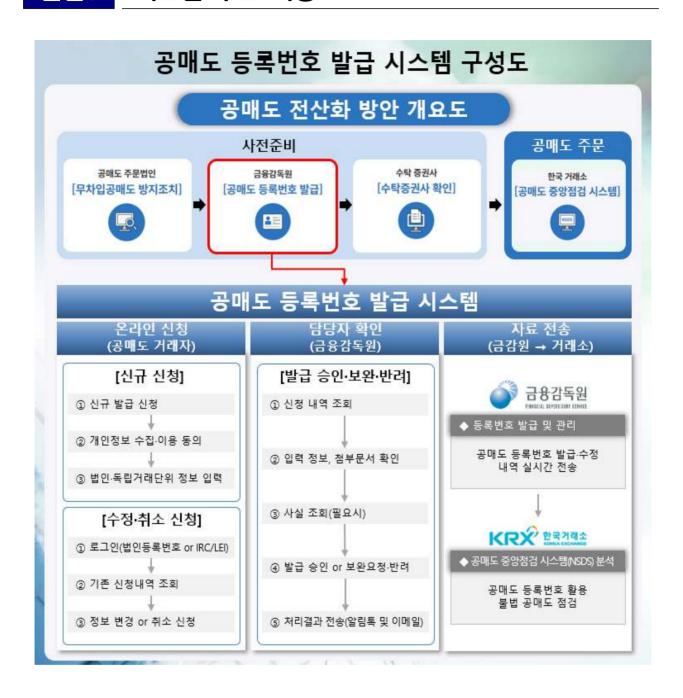
Ⅲ. 향후 일정

- □ 기관내 **잔고관리시스템** 구축을 **완료**한 투자자 **순으로 등록** 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
 - 이후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

< 공매도 전산화 주요 추진일정('25.1월~3월) >

주요업무	′25.1.		'25.2.	'25.3.		
- 수탁증권사 확인		수탁증권사 확인 및 확인결과 금감원 보고 등				
-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	등록번호 순차적 발급 (국내 증권사, 운용사 → 외국계IB 順)					
- NSDS 개발 및 테스트	전산연계 모의테스트					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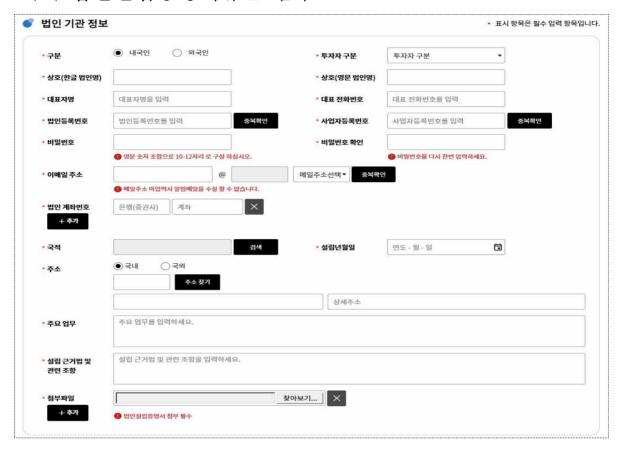


[발급 신청]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작성·제출

- □ 신청 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^{*} 內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 신규 발급을 신청
 - * 금감원 홈페이지 \rightarrow 참여·소통 \rightarrow 금융회사소통 \rightarrow 자본시장보고 \rightarrow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

● 투자자 기본 정보 입력

- 법인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법인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증명서류를 첨부



2 제출인(담당자) 정보 등 입력

- 공매도 등록번호 사용 개시 예정일 및 알림톡, 이메일 등으로 처리결과를 전송받기 위한 제출인(담당자) 정보 입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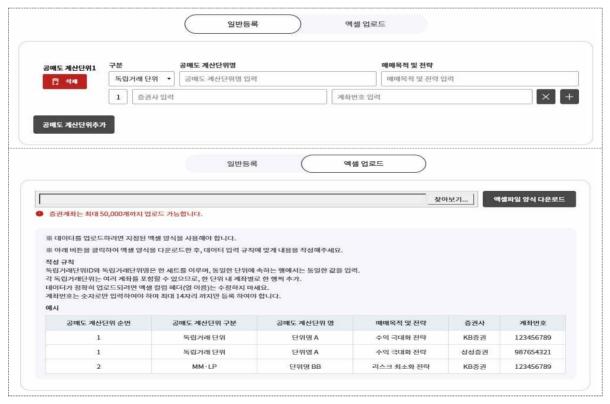
❸ 독립거래 단위 적정성 자기점검

-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적정성 자기점검 실시 후 시스템에 관련 내규를 첨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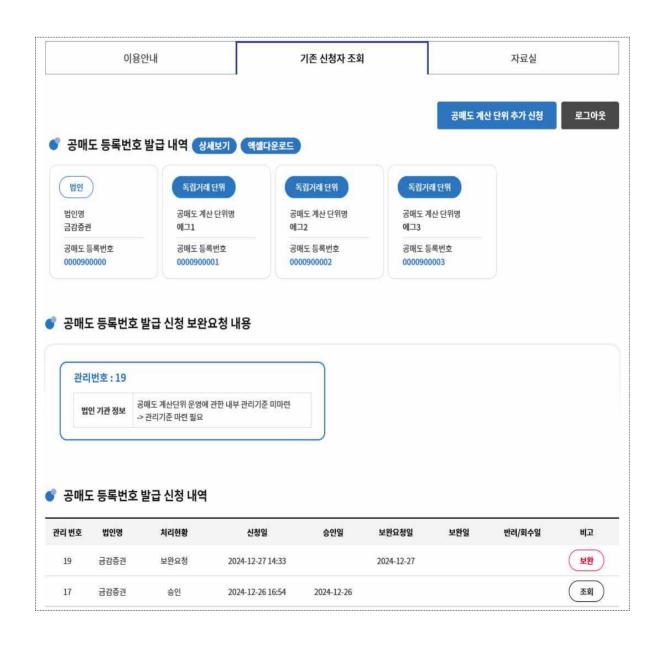
4 독립거래 단위 정보 입력

- 독립거래단위 별로 매매목적 및 전략, 계좌번호 등을 입력 (독립거래단위 간 계좌번호 중복 시 경고 알림 기능 有)
 - ※ 독립거래단위를 대량으로 운영할 경우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첨부파일로 업로드



2 [조회·수정] 처리결과 조회 및 정보 수정

- □ 신청 법인은 **법인등록번호**로 로그인*하여 금감원 처리결과 및 보완요청 내용 등을 확인하고, 필요시 기존 정보를 수정
 - * 국내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 법인은 IRC 또는 LEI로 로그인
 - **금감원 담당자의 보완요청이** 있을 시 관련 내용을 **한눈에 확인 가능**



3 [자료 전송]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정보 실시간 전송

- □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은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(NSDS)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 (등록번호를 NSDS에 전송)
 -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종 호가(신규, 정정, 취소호가)를 연결하여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점검
 - 또한,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 사용 및 독립거래단위 간 계좌번호 중첩 사용 여부 등을 검증

붙임2 공매도 등록번호 관련 안내사항

- ① (발급대상)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설비(이하 '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') 의무구축 법인*, ** (영 제208조의7제3항)
 - *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
 - ** 다만,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의무 배제 (영 제208조의7제3항단서)
 - ※ ①의 발급대상 법인은 매매거래(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)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거래소/투자중개업자에 알려야 함(규정 제6-37조제2항)
- ② (발급단위) 전산시스템 의무구축 법인의 고유재산 및 투자자 재산의 거래내역 보고를 위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필요

● 고유재산

- (법인) 전산설비 구축 법인에 대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
- (독립거래단위) 금융회사*가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
 - * 은행, 증권, 보험, 자산운용, 외국금융투자업자
- (MM·LP) MM·LP(헤지거래 포함)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
- ※ 규정 제6-37조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중 독립거래단위 또는 MM·LP에 귀속되지 않는 매매거래에 대해서도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매매 거래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거래소/투자중개업자에 알려야 함에 유의

② 투자자 재산

- ※ 신탁계약·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해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투자자 재산에 한정(순보유잔고 산정 범위와 동일)
 - (원칙) 일임재산, 신탁재산, 그 밖의 투자자 재산의 경우에는 각 재산별*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
 - *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
 - (예외) 다음 (i), (ii) 요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자 재산*에 한해서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
 - * 계약 등에 따라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한 투자자 재산도 포함
 - (i)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
 - (ii)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공매 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
 - ※ 공매도를 하는 투자매대·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고, 실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 필요
- ③ (신청 및 변경)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·변경·폐기 등은 미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산 신청
 - * 홈페이지 > 참여·소통 > 금융회사 소통 > 자본시장보고 > 공매도등록번호발급신청